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

2017년 7월 1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18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18.(화)	담당부서	인증산업진흥과
담당과장	김연수 과장(043-870-5500)	담 당 자	김상연 사무관(043-870-5503)

융합신제품의 인증,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!
- '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' 기업 간담회 개최 -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정동희)은 '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(이하 '**적합성인증 제도**')'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(8개)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· 일시 / 장소 : '17.7.18.(화) 15:00~17:00 /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(양재)
· 참석자 : (산업부) 정동희 국표원장(주재) / (생산기술연구원)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/ (업체) KMW, 큐라코, 브로스앤컴퍼니, 일진복합소재,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, 대성테크, 모션디바이스, 르노삼성

□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**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**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'적합성인증 제도*'를 운영해 왔으나,

* (적합성인증 제도)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-Track(6개월 이내)으로 인증(KC, KS 등)을 부여, 산업융합촉진법 제11~16조에 근거

○ 여전히 **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**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,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'**적합성인증 제도 발전방안**'을 마련했다.

□ **발전방안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(사전검토 단계)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**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**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**지원 방안을 차별화**하여,

- 안전성 **이슈가 없으면**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,

- **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**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, 문제가 생기면 **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**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.

○ (제도신청 단계) **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**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,

- 시행령을 개정하여 **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**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.

○ (인증기준마련 단계)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**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**되는 문제에 대해서는,

- 시험인증기관 중 **전담팀을 지정**하여 **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**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○ (기타) 이외에도 **정부 연구개발(R&D) 결과**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**본 제도로 연계**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

-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, **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시험을 면제**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□ 업계는 이를 통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,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의 **적극적 태도** 및 **인증에 대한 인식전환**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이를 위해 국표원의 **지원 역할**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,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**제도 교육** 및 **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**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□ 국표원장은 동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**신속히 시행**할 예정이며,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하여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김상연 사무관(043-870-55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7-18 10:50:56

붙임1 『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』 개요

◈ **적합성 인증 제도** : 개발이 완료된 **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**을 **6개월 이내(Fast-track)**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※ 법적 근거 : 산업융합촉진법 제11~16조

⇒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의 **빠른 시장 진출을 지원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융합산업의 활성화 촉진

□ **(배경)**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신제품*이 늘어나고 있으나 **인증 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** 시장출시에 어려움 발생**

* 융합신제품 : **기술과 기술 및 서비스가 결합**하여 새로 만들어진 제품

** 인증기준 제정에 **평균 3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**되어 적시 시장진출 실패

< 관련 사례 >

< 제도 적용 前 >	< 제도 적용 後 >
(트럭지게차) 인증과정의 어려움으로 시장출시까지 총 **3년 9개월 소요**	(융합안전모) **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** 시장출시까지 총 **3개월 소요**
	

○ (경과) '16.3월 국표원 內 **'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센터'**의 개소 이후 '민관합동 지원협의회' 운영, 홍보 강화 등으로 제도 활성화

* 적합성인증센터 개소 이후 **애로발굴 건수 대폭 증가**(5건 → 43건)





붙임2 『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』 개선 방안

◈ 운영상 주요 **bottle-neck**을 해소하여 **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**

⇒ 산업융합 활성화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에 기여

⇒ 융합화에 적합한 **표준·인증제도 마련의 마중물** 역할 수행

< 제도 절차 >	As is	To be
I. 인증애로 발굴	**인증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산재** ·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 · 추가적인 애로발굴 통로 필요	**인증애로 발굴통로 다각화** · 기업대상 권역별 홍보 지속 · 정부 R&D과제 완료 후 인증애로를 본 제도로 연계
II. 전문가 사전검토	**안전성 이슈 제품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 우려** · 적합성 인증으로 시장출시된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소관부처가 책임 부담	**안전성 이슈 유무에 따라 구분 지원** · (안전성이슈 X) Fast-track · (안전성이슈 O) 인증기준 개발 및 심층검토, 기업책임 부담제도 도입
III. 적합성 인증 제도 신청	**법·제도의 구조적 한계** · 기존 인증 소관부처의 적합성 인증 제도 접수 기피	**시행령 개정 추진** · 국표원이 적합성 인증 제도 신청을 지원토록 시행령 개정
IV.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	**시험검사기준 제정에 시간적으로 부족** · 적합성 인증 협의체의 핵심인 인증기준 마련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	**기준 초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 지정** ·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검토·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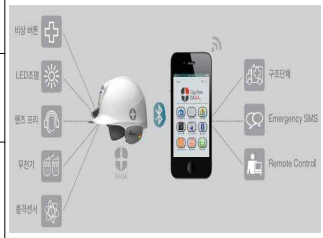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7-18 10:50:56

붙임3 **『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』 사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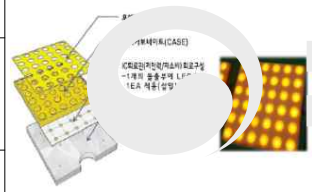
① 통신조명센서 등이 융합된 산업용 융합안전모(노동부, '14.10월 KC인증)

개요	무선통신, 조명, 센서 등이 융합되어 작업효율성과 안전성 향상
애로내용	구멍, 무게규정(보호구 의무안전고시)에 의해 안전모 등 급인증을 받을 수 없어 현장사용 불가
인증결과	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·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, 산업융합촉진법 §13③에 의하여 보호구안전인증 취득



② LED 안전유도블록(산업부, '15.7월 KS인증)

개요	고강도 콘크리트 위에 LED소자 IC회로판, 플라스틱 케이스, 우레탄을 체결방식으로 결합한 융합 제품
애로내용	▪융합 제품에 대한 성능, 우수성 보증 인증규격 부재 ▪공공부문 판로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인된 성능 인증을 제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판매에 애로
인증결과	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·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('15.7.30)



③ 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(산업부, '17.2월 KS인증)

개요	기존 태양의 일사조건 하에서만 에너지 획득이 가능하던 태양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사이클인 히트 펌프 사이클을 적용함으로써, 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공기열(대기열)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함
애로내용	Unglazed Type 집열기와 히트펌프로 구성된 태양열 온수기로, 관련 신재생 에너지설비 KS인증에 규정된 시험·검사 기준 및 방법이 맞지 않아 인증을 得할 수 없음
인증결과	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·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('17.2.16)

